

회장
상근부회장
고지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2014. 2. 4.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14. 2. 4(화) 14:00 ~ 15:25

2. 장 소 : 우리 협의회 회관 삼다수홀

3. 참석인원 : 재적이사 15명 중 14명 참석(감사 2인은 정족수 제외)

가. 참석(11명) : 고치환, 송옥희, 부형중, 이연봉, 김금자, 김순효, 박영식, 박정해, 양광호,
양은심, 이홍기

나. 위임(3명) : 김재익, 김옥희, 김성숙

4. 개회 및 성원보고

김성건 부장의 성원보고 후 고치환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5. 의장인사

구정 명절을 갓 지난 바쁘신 시기에도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다. 오늘 회의는 우리 협의회 개인회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형범 회장이 우리 협의회 ‘회장 등 선거에 관한 규정’이 급조 위조 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의 ‘회원동정’이라는 문서를 지난 2013년 12월 31일 개별 사회복지사 및 도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에 발송한 행위에 대해 1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그 행위가 우리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된다고 의결하고 그 당사자를 불러 진위를 듣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결정하자는 참석 이사님들의 결의가 있어 오늘 이사회를 열게 되었다고 하며,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하다.

6. 전자회의록 처리

- 의 장 : 김성건 부장에게 전자회의록을 낭독하라고 하다.

- **부형종 이사** : 김성건 부장의 전자회의록 낭독에 앞서 회의자료에 첨부된 사안임으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전자회의록이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가. 부의안 채택

- **의장** : 오늘 회의에 상정된 의안은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개정안과 제2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 상실안이라고 하고, 이밖에 협의회와 복지관, 어린이집 발전을 위해 추가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사들 원안상정을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원안대로 2건의 안건이 채택됨을 선포하다.

나. 부의안 상정

- **의장** :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다.

다.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양광호 이사** :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나 한국사회

복지협의회에서 별도의 준칙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부분인지를 물다.

- 김성건 부장 : 별도의 준칙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직원복리증진 차원에서 개정되는 사항이며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보수규정 개정안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공포일로 되어있다며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되는 시점 이후로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절차상 맞을 것 같다. 만일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했다면 당초 개정안 부칙에 그 사항을 표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현재 개정안의 내용대로는 공포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은 년초이고 직원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임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이연봉 부회장 : 2014년도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수규정개정안의 조문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하고 부칙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이연봉 부회장의 수정안에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의장 : 제1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보수규정 개정안은 부칙에 제19조의 내용은 적용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라. 부의안 상정

- 의장 : 제2호 의안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자격상실안을 상정하다.

마. 부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

- 의장 : 협의회 김성건 부장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다.



- 김성건 부장 : 회의자료를 중심으로 제2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다.

- 양은심 이사 : 오늘 한형범 회원이 보내온 소명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협의회 정관, 회원규정 등을 갖고 회원의 자격이라던지 회원자격 상실안이 적정한지,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부분 등의 많은 내용들을 오히려 물어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과 이해를 시켜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의장 : 사무실에 한형범 회장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회의장에 출석시키기 전에 먼저 한형범 회원이 보내온 소명서에 대한 답변 등을 할것인지 아니면 오늘 회의가 회원동정 건을 갖고 회원자격을 상실할지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이 사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한형범 회원 소명서 5번에 보면 2014년 1월 2일 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한형범 회장이 허위事實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못하며, 추후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라는 내용을 보고 이 사안을 종결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다른 행위가 있었는지 묻다.

- 김성건 부장 : 2014년 1월 3일자로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했으며 그 결과 감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며 지난 1월 22일 복지청소년과 담당 계장과 주무관이 협의회를 방문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확인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오늘 회의는 회원동정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배포한 사안을 갖고 회원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이므로 이 사안에 대한 소명을 듣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양은심 이사 : 회원자격상실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는것이므로 소명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소명서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할 사항은 아닐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다.
- 이연봉 부회장 : 오늘 회의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며 현재 문제가 되었던 회원동정건에 대한 소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 정도가 있음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고 하다.

(※ 이연봉 부회장이 개인 신상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며 이사들의 양해를 구한 후 퇴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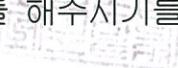
- 의장 : 회원동정건에 대한 부분만 소명을 듣고 처리하자고 하고 한형범 회원을 회의장에 참석하도록 사무처에 지시하고 회의장 자리를 정돈하도록 지시하다.

○ 한형범 회원 참석하다.

- 의장 : 오늘 이 자리는 회원동정이라는 유인물을 12월 31일 도내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들에게 배포한것에 대해 우리 협의회 회원으로서 적절한 행위인지 진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좋지않은 방향으로 유도할려는 의도는 없으므로 진정성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하다.

그리고 여기 자리해 있는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사님들은 현재 제주사회복지계가 반목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현실에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하다.



- **한형범 회원** : 발언에 앞서 죄송하다고 하고 회장선거 이후 정관 및 규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치환 회장님의 당선에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협의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현했으며 또한 고치환 회장님 취임에도 진심으로 축하를 보냈다고 하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회장선거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협의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금 현재 회원규정이나 선거규정 등이 법령과 정관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다시 선거가 치러질 경우 계속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선거규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의 회의록 내용이나 홈페이지 게재되는 상황이 제가 판단할때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되었고 그 내용에 대해 사무처에 몇차례 질의를 했으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협의회 사무처와 더 이상 충돌을 원치않아 12월 28일 중견사회복지사들 7명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2월 31일 회원동정을 사회복지사협회 대의원들과 사회복지시설에 발송했다. 그 이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월 2일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저의 내용이 허위 사실 유포이며 차후에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공

지되어서 저는 이 사안이 이것으로 종결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다. 그리고 개정이 필요한 정관이나 규정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회장님께 건의하려고 하던차에 감사위원회 조사관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그 자리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정관이나 규정들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되었고 그 조사관이 담당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로 문서를 통해서 확인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듯 회원자격상실을 두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착찹한 심정이다. 회원제명이라는 사안은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하고 고민해보아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하다.

제가 협의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기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는 않았다. 단지 협의회의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잘못 오해를 한다면 전임 회장이 경고성으로 종결한 사안을 신임회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처리 하시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하다.

끝으로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40여년 걸어온 삶에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싶지않다. 저도 회장님의 말씀하신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회장선거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이후로 모두 종식된 상태이다.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3자 대면이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다고 하다.

- 의장 : 회원자격상실의 의도를 갖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 한형범 회장님을 이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형범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다. 다만 회원동정이라는 문건의 내용들이 여러경로를 통해서 협의회가 급조 날조한 것으로 전파되었되었다는 점이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고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 의장 : 참석이사들에게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달라고 요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지난 12월 28일 중견사회복지사 회동에서 우리 협의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견사회복지사 회동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회원동정이라는 내용을 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로 발송한 것 인지를 묻다.


- 한형범 회원 : 그렇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그렇다고 하면 그 중견사회복지사 회동에 참여한 7명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하다.
- 한형범 회원 : 개인신상에 대한 사항으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그럼 지난 1월 2일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안내문 내용을 보고 회원동정에서 언급했던 급조 위조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묻다.
- 한형범 회원 : 급조 위조되었다는 내용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조문내용이 명확이 표시되어있지 않아서 의심을 갖고 있었고 감사위원회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질문한 부분인 우리 협의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을 읽고도 급조 위조되었다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다.
- 박정해 이사 : 좀전에 소명하신 내용 중에 회원동정에 대한 사안은 협의회에서 1월

2일 홈페이지 안내문내용을 보고 종결된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음으로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자고 하다.

- **부형종 부회장** : 감사위원회에는 공문으로 접수를 하신것인지를 묻다.

- **한형범 회원** : 공문이 아닌 상담으로 접수된 것이다라고 하다.

- **부형종 부회장** : 1월 2일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보고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왜 1월 3일 감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한것인지를 묻다.

- **한형범 회원** : 제가 의도한 것은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이 상위법률과 정관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항은 앞으로 협의회를 위해서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하다.

- **의장** : 징벌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다. 저는 상생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 한형범 회원 역시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가족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밖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나갈 것이다. 서로가 협력하고 화합할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하다.

끝으로 당부할 사항으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불법이니 잘못되었다고 하는 등의 문제는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전임회장과의 개인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간에 한형범 회장님과 전임회장님간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사죄를 하고 앞으로는 함께 화합과 협력을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지를 묻다.

- **부형종 이사** : 만일 한형범 회장이 그동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사과문을 우리 협의회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물다.
- **한형범 회원** : 오늘 이사회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홈페이지에 모두 공지가 되어지는 사항임으로 별도의 사과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사과의 문제는 화합을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협의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다.
- **박정해 이사** : 이 자리에서 사과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받아들여 주자고 하다.
- **김금자 이사** :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장으로서 좀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서 그 간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정도의 사과도 있었으므로 앞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다.
- **한형범 회원** : 김금자 이사님의 말씀과 여러 이사님들의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하다. 앞으로 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다.
- **의장** : 사과문까지 받고싶은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욕심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다. 단 앞으로 협의회나 회장에 대해서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요청하며 사과의 마음을 담은 마지막 발언을 해주시길 요청하다.
- **한형범 회원** : 바쁘신 중에도 저로인한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신 이사님들께

죄송하다고 하다. 저로 인해서 협의회에 문제가 되었다면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고치환 회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협의회가 도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회복지대표기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다.

○ 한형범 회원이 회의장을 퇴장하다.

- 의장 : 한형범 회원에 대한 ~~처벌적인~~ 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길 요청하다.
- 박정해 이사 : 그동안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했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다.
- 부형종 부회장 :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다.
- 송옥희 부회장 :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우려하지는 말고 만일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 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다.
- 양광호 이사 : 한형범 회원과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는 아니지만 오늘 소명이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이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며 중견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이나 협의회 안내문을 읽고 이해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과연 충실한 소명의 자리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
- 박영식 이사 : 오늘 이사회에서 구두상으로 사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이사회의 정식

안건으로 회원자격상실안이 다뤄진것이기 때문에 구두상의 사과를 받았다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안된다고 본다. 공문을 통해 ‘회원동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우리 협의회 관련규정에 의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본인이 소명을 통해 앞으로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복지의 대승적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 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번 한번에 한해 엄중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의결하며 차후 금번과 같은 행위가 재발될 경우 회원자격상실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해 보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다.

- **부형종 부회장** : 박영식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 **의장** : 박영식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사들 동의 재청하다.
- **양광호 이사** : 오늘 한형범 회원이 솔직한 답변이 있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다.
- **의장** : 대다수의 이사들이 동의하고 있고 안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동의해 줄 수 없는지 양광호 이사에게 양해를 구하다.
- **양광호 이사** :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건의 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처리해 주라고 하다.

- 김금자 이사 : 모든 사안에 대하여 100%의 동의를 얻을 수는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이사들이 분위기에 훨씬 더 동의하는 것보다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하는 이사들이 있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오늘은 반대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이사들이 동의하고 있음으로 박영식 이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다.



- 의장 : 그럼 제2호 의안 회원자격 상실안은 한형범 회원에게 공문을 통해 엄중경고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공문 내용을 “1. 회원동정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이 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한다. 2.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회원규정에 의거 회원자격상실을 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본인이 소명을 통해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회복지계의 대승적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이사회는 받아들인다. 3. 이에 금회에 한해 ‘엄중경고’ 처리하며 차후 금번과 같이 회원으로서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만일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이사회에서는 회원자격상실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한형범 회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8. 폐회

- 의장 : 오늘 장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함을 밝히고 폐회를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양은심 이사 : 폐회를 동의하다.

- 이사들 동의, 재정하다.
- 의장 : 2014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15:25)

2014년 2월



4일

회장 : 고 치 환



부회장 : 부 형 종 송 옥 희 이 연 봉



송 옥 희



이 연



이사 : 김 금 자 김 순 희 박 영 스



김 순 희



박 영



박 정 해 양 광 양 은



양 광



이 흥 기



확인자 : 김 수 원



기록 : 김 성 건

